

수원지방법원 2021. 2. 5 선고 2019가단54034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피고1. 주식회사 B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맥

담당변호사 남성원

변론 종결2021. 1. 15.

판결 선고2021. 2. 5.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99,244,660원 및 이에 대한 2019. 6. 12.부터 2019. 8.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주식회사 B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9. 6. 4. 접수 제764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보전권리

-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각종 공사 자재를 공급하고, 그 미지급 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2019. 2. 25. 피고 회사로부터 액면금 199,244,660원, 지급기일 2019. 6. 11., 지급지 D은행 방배동지점으로 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받았다.
- 2)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상 지급기일인 2019. 6. 11. 위 지급지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되었다.

나. 피고 회사의 부동산 처분행위

피고 회사는 2019. 6. 4. 피고 C 앞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9. 6. 4. 접수 제76445호로 2019. 6. 4.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피고 회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에 따른 액면금 199,244,660원 및 이에 대한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9. 6.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8.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9. 6. 4. 현재 이미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는 이전에 피고 회사에 공급하였던 자재 공급 대금의 변제를 위한 것으로서 이미 피고 회사에 대한 자재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인바,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위 약속어음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할 것이다.

2) 가)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8년경 피고 회사에 대하여 8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8년 말경 당시 피고 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위 대여금 채권을 대물변제받기로 하되, 대신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피고 회사에 차액 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다만 피고 회사의 위 차액 40,000,000원 상당의 대금 청구권과 피고 C의 대여금 채무 중 40,000,000원 부분을 상계하기로 한다고 약정하였으나, 단지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9. 6. 4. 마친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은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2018년 말경 이루어진 처분행위로서의 약정 이후에 비로소 발생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을 제2호증의 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 C이 피고 회사에 8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2018. 10. 9.자 금전소비대차 약정서(을 제2호증의 1)와 피고 회사가 피고 C으로부터 같은 날 8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제2호증의 2)이 작성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 회사의 결산보고서에 첨부된 주주임원단기채무 명세서에 피고 C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76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피고 C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일과 같은 날 이루어진 '2019. 6. 4. 매매'인 이 사건 매매계약인 점, ② 피고 C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이 2018년 말경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와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8년도 결산보고서상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여전히 피고 회사의 채무로 계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역시 피고 회사의 고정 자산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어 피고 C의 위 주장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③ 피고 C의 주장대로라면 적어도 위 약정에 따라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어야 할 것이나, 그와 같이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 사실을 비롯하여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권 발생 전에 이미 피고 회사가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회사의 무자력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9. 6. 4.경 ①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강원 고성군 E 콘도 F호 중 1/10 지분, 양주시 G아파트 H호가 있었고, 그 가액이 약 706,800,000원(= 이 사건 부동산 520,000,000원 + 위 콘도 700,000원 + 위 G아파트 186,100,000원)인 사실, ②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D은행에 대한 채무 3,263,000,000원, I은행에 대한 채무 200,000,000원, J회사에 대한 채무 6,000,000원, K카드에 대한 채무 8,000,000원, L공제조합에 대한 채무 10,488,000,000원 등의 합계 13,965,000,000원(= 3,263,000,000원 + 200,000,000원 + 6,000,000원 + 8,000,000원 + 10,488,000,000원) 등을 부담하고 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무를 제외한 소극재산의 가액 13,965,000,000원마저 적극재산의 가액 706,800,000원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 1)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2019. 6. 4.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회사의 일반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공동담보 부족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인 피고 회사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 회사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3) 가)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변제를 위한 대물변제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피고 C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택한다).

나) 피고 회사의 결산보고서에 첨부된 주주임원단기채무 명세서에 피고 C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76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7198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피고 C의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인 피고 C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것은 다른 일반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사해행위가 된다. 따라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가) 또한,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이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피고 C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택한다).

나) 수익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등 참조). 갑 제3, 4, 5,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피고 M의 모일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의 주주이고, 2015. 2. 10.부터 피고 회사의 감사로 재직한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394,758,130원은 당시 한국감정원 부동산 시세의 하한 평균가 약 520,000,000원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에 대한 악의 추정을 반복하여 피고 C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 회사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C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승훈

별지